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7887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물품대금이 34,980,000원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사로서 연대보증한 것인데, 연대보증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먼저 책임을 묻고 미지급금이 생길 경우에만 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동석